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1호 2021. 11. 4.(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89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90호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791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792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793호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794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83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394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안)[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도)] ----- 17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399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9
- 사천시 공고 제14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6
- 사천시 공고 제140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8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사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나.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1항 중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변보호)”를 “(신고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신분노출”을 “신분 노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의 신고자란 중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하고, 신고대상란 중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9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감사청구 주민의 수)”를“(감사 청구 주민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연서하여야 하는 19세”를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을 “100명”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  
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복지”를 “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을 “한부모가족·미혼모·미혼부·가출여성·요보호여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 및”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3절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9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일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1. 4.>

##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

일 시	조 명	활동지역	주 요 활 동 내 역
특이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1. 4.>

##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 추진기간 :
- 참여인원 :       명
- 활동횟수 :       회
- 주요활동장소 :

- 주요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개선대책

- 우수 및 수범사례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179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농업·농촌”을 “사천시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규칙 제78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1. 11. 4.>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합 계	162	162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4	44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별표 3] <개정 2021. 11. 4.>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 계	1,565
사천읍	212
정동면	151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09
동서금동	110
별용동	217
향촌동	81
남양동	85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394호

##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안)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시도)]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1. 도로의 종류: 사천시 시도
2. 노선번호·노선명 : 25호선(덕곡 ~ 용치)
3. 사용 개시 구간 : 사천시 대포동 438-12 ~ 430-3(L=0.25km)
4. 주요 통과지 :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5. 사용 개시일 :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나. 열람장소 : 사천시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055-831-3377)
7. 비고 : 사천시 시도25호선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구간(0.25km)의 도로 사용 개시

붙임 : 도로사용 개시구간 지형도 1부.

(붙임) 도로사용 개시 구간 지형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399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신설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 751 호

- 라. 단장 등의 임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마.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소집수당 지급기준 등 신설
  - ※ 소집수당: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 바.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 출입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사.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5, FAX: 831-6036)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이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애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 급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 ○ ○

##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사천시장 귀하

##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붙임]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 출 입 증

<b>출 입 증</b>
사 진 (3×4cm)
<b>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b>

← 5.5cm →

<b>지역자율방재단원증</b>
NO. 000      혈액형 O(RHO)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바탕 배경에 시 상징(회장) 삽입

↑  
7.7cm  
↓

[별지 제7호서식]

##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관 련 법 규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972명 → 984명(증 12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955명 → 963명(증 8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21명(증 4명)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972명 → 984명(증 12명)

2) 일반직 계: 941명 → 953명(증 12명)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소계: 882명 → 893명(증 11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0명 → 1명(증 1명)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2명”을 “9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5명”을 “96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9</u> <u>72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95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17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u>98</u> <u>4명</u> ----- --. 1. ----- <u>963명</u> 2. ----- <u>21명</u>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1% 이내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84							
정무직 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계	953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소계	893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공고 제2021-140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동금2지구>, <죽림3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변경

나.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m <sup>2</sup> )	비고(위치)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계					123	15,223.6	
1	동서금동	동금동	선구동	선구동	18	1,210.3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2	동서금동	서금동	선구동	선구동	32	3,290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3	동서금동	서금동	동서금동	동금동	30	2,906.8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4	선구동	선구동	동서금동	서금동	2	99	팔포매립지 북측 주변
5	남양동	송포동	남양동	죽림동	41	7717.5	신우심포니타운아파트 주변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p>

[별표]

##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초 전 리	초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중 천 리	중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용 현 면	선 진 리	선진리 일원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신 복 리	신복리 일원
	온 정 리	온정리 일원
	석 계 리	석계리 일원
	구 월 리	구월리 일원
	용 치 리	용치리 일원
	송 지 리	송지리 일원
	금 문 리	금문리 일원
	주 문 리	주문리 일원
	덕 곡 리	덕곡리 일원
축 동 면	길 평 리	길평리 일원
	배 춘 리	배춘리 일원
	사 다 리	사다리 일원
	탑 리	탑 리 일원
	반 용 리	반용리 일원
	가 산 리	가산리 일원
	구 호 리	구호리 일원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묵 곡 리	묵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향 리	중향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립 리	송림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량 리	구량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 · 선구동에서 서금동으로 편입된 지번(41-38, 41-232) 제외
동 서 금 동		동금동, 서금동 일원 · 동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441, 441-20, 441-2, 441-3, 441-16, 441-17, 441-19, 441-23, 441-24, 441-25, 441-27, 441-28, 441-29, 441-30, 441-31, 441-32, 441-33, 441-34) 제외 · 서금동에서 선구동으로 편입된 지번(5, 6, 43, 44-1, 44-2, 44-3, 44-4, 45-2, 46-1, 46-2, 46-4, 46-3, 46-5, 47, 48, 74-3, 75-2, 75-6, 76, 77, 79, 128-35, 81, 93, 98-1, 94-1, 95, 97, 98-3, 99-7, 128-38, 128-40) 제외 · 서금동에서 동금동으로 편입된 지번(1, 2, 3, 4-2, 4-3, 4-1, 5-2, 5-1, 6-2, 6-1, 10, 8-1, 43-1, 42-1, 10-1, 9-4, 11, 128-30, 12-1, 13, 12-4, 12-5, 128-1, 15, 17, 23-1, 22-1, 19, 18, 20-1) 제외
별 용 동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 송포동에서 죽림동으로 편입된 지번(279-1, 279-10, 279-15, 280-1, 280-5, 354-10, 1498-43, 279-7, 257-12, 279-9, 279-14, 279-5, 279-12, 279-6, 279-13, 279-4, 279-11, 278-9, 278-8, 278-1, 278-6, 278-7, 259-2, 259-13, 258-1, 258-12, 258-8, 258-9, 258-17, 258-4, 258-5, 256-1, 256-10, 256-6, 257-1, 256-12, 257-7, 1509-6, 257-6, 257-10, 1509-52) 제외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사 천 시 공 보

제751호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